감정평가의뢰서							
감정평가의뢰물건	□토지 □주택 □상기	· □공장 □아파트 □기타()					
의뢰물건의 소재지							
주소 구소							
소유자 성명	(전화번호 :)						
감정평가서의 사용목적	□담보(금융기관, 보험회사, 일반) □경매 □처분 □보상 □관리 □자산평가 □일반거래 □임대차 □기타 (
감정평가서의 제출처		(전화번호 :)					
채무자명(담보인 경우)		(전화번호 :)					
의뢰물건의 추정가액	₩ (감정평가서 소요부수 : 부)						
감정평가에 필요한 자 료	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: ③ 토지(임야)대장 : ⑤ 지적도(또는 임야도) :	부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: 부 부 ④ 건축물관리대장 : 부 부 ⑥ 기타 ()					
기타 참고사항							
계산서를 공급받는자의	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(법인명)	③ 성명					
세무보고용 기재사항	④ 전자세금계산서						
후면 기재의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. 년 월 일 위 의뢰인 주 소 기관 또는 상호							
성	명	(인) (Tel.)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, 본관 7충 (여의도동, 기계진흥회관) TEL: (02)782-7877, FAX: (02)782-7879							
소유자와 의뢰인이 다른 경우 본인의 소유인 위 물건에 대하여 의뢰인 가 더밸류감정평가법인(주)에 감정평가 의뢰함을 동의함.		금융기관 등의 담보감정인 경우 위의 감정평가 의뢰목적이 담보대출임을 확인함. 년 월 일					
년 소유자(권리자) 성명	월 일 (인)	금융기관 부 점 (인)					
접수번호		착수금					
착수금 및 감정	평가수수료 입금계좌	하나은행 256-910061-51004 (예금주 : 더밸류감정평가법인(주))					

약정사항

- 1. 감정평가의 물건(권리)중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사변이나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2. 감정평가 의뢰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를 납입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3. 감정평가 의뢰물건의 추정가액을 기준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정평가 착수금으로 감정평가 접수 시 납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당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소요추정 출장여비를 착수금에 포함합니다.
- 4. 감정평가의 보수는 당사의 감정평가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5.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6.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. 다만, 감정평가불능 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(담보 감정평가인 경우 확인 금융기관 등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귀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7항에 준합니다.
- 7. 감정평가 의뢰 후 당사의 현장조사 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제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 착수금의 50%를 당사에 귀속하며 현장조사 후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을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.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8.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와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6항 단서, 제7항 및 제10항 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하지 아니한 착수금은 동 항에 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9. 당사의 승낙없이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(감정평가 목적에 기재된 제출회사 및 금융기관 외의 자)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, 개작, 전재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10. 감정평가 의뢰물건의 소유자(권리자)와 감정평가 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(권리자)의 동의를 득하여 의뢰하여야 하며, 소유자(권리자)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 의뢰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유자(권리자)와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11. 감정에 관한 소송은 당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- 12. 당사와 감정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 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더밸류감정평가법인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, "의뢰인"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더밸류감정평가법인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제 3자 제공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목적 : 감정평가 업무 및 감정평가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
-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필수항목 : 소유자 및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, 감정평가 의뢰 물건 소재지 (단,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)
- 선택항목 : E-mail
-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감정평가서 발송일로부터 5년 (「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)
- 의뢰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감정평가 의뢰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 업무를 착수할 수 없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/	사항에 동의 	하십니까? 	□ 동의함	□ 동의하지 않음	
	년	열	일		
			의뢰인 :	(인)	

더밸류감정평가법인㈜ 귀중